

(재)전북테크노파크공고 2023 - 0076호

『2023년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 과제 컨소시엄(탄소기업-민간시설) 대상 2차 모집 공고

도민들에게 탄소응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탄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 과제 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전라북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 절감·복지·안전 분야 등의 확대가 필요한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탄소응용제품을 공급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탄소응용제품 우수성 홍보 및 탄소산업 저변확대
- 지원대상** : 탄소응복합분야 사업 영위 도내 중소기업
- 모집분야 및 지원규모** : 2개 분야 1개사 내·외

모집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탄소응용제품 민간시설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기업(도내 탄소기업)과 수요처간 탄소응용제품 보급 계획 수립 후 과제 신청 시 예산 지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시설, 농·어촌 시설 등	1개사 내외	48,350천원 이내
탄소응용제품 민간시설 시범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기업(도내 탄소기업)과 수요처간 상용화 이전단계 탄소응용제품 보급 계획 수립 후 과제 신청 시 예산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전라북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치한 탄소융복합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 ▶ 부동산업, 유통업 등 정부지원사업 제한분야 제외 등
-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최근(2022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 마감일까지 20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2년도 말 기준 추정재무 제표를 제출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2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발급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2022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확인 결과 규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 제외 대상(자본전액잠식)에 해당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선정취소, 협약해약 될 수 있음
- ▶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 견 지원 제한

3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2개 분야 (탄소옹용제품 민간시설 보급, 탄소옹용제품 민간시설 시범보급)

< 세부지원 내용 >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지원규모
탄소옹용제품 민간시설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상용화된 탄소옹용제품을 민간시설에 보급 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분야) 에너지 저감, 안전, 복지 등 ▶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48,350천원 이내 <p style="margin-left: 20px;">※ 공급기업(주관기업 포함 5개社)-수요처(5개소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 ex) '공급기업 (A+B) - 수요처(C+D+F)'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가능</p> 	
탄소옹용제품 민간시설 시범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상용화 이전단계* 탄소옹용제품을 민간시설에 보급 시 비용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7~9단계(⑦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 완료, ⑧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⑨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제품으로 테스트 기간(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p style="margin-left: 20px;">*상용화 이전단계 기준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단, 연구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제품 거래 또는 소규모 거래<제품 단가의 10배 이내>는 상용화로 보지 않음)</p> ▶ (지원분야) 탄소옹용제품 활용 전 분야 ▶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48,350천원 이내 <p style="margin-left: 20px;">※ 공급기업(1개社)-수요처(1개소) 컨소시엄 구성 가능</p> 	1개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기획) 공급기업(도내 탄소기업)-수요처(민간 사회복지 시설, 농·어촌 시설 등)간 보급 계획 협의 후 과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체가 구매처가 되는 경우 지원 제외, 복지시설 가점 부여 ▶ (예산조정) 선정평가를 통한 민간보급 지원금 조정 가능 ▶ (자부담) 탄소산업 참여형태에 따라 자부담 비율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사업화 기업* : 총 사업비 80% 지원 - 탄소지정 기업** : 총 사업비 85% 지원 - 우수 탄소 기업*** : 총 사업비 90% 지원 <p>*전라북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치한 탄소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탄소기업 ***탄소지정기업 중 우수 탄소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수 탄소기업 지정서를 받은 기업</p> ▶ (지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동일 제품·분야에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한(단, 신청 제품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19~'20년도 공급기업의 경우 기존 납품 수요처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단, 지원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 	

4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5~6월 중)

주관기업(공급기업·수요처)
→ TP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및 확인
 - 적정성 여부 판단 등을 위한 현장 종합 컨설팅 진행 가능

과제심사·선정
(6월)

TP

- 제출 서류 검토 후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예정
- 타당성 심사 및 기업 선정

원가분석
(6월)

원가분석 전문기관

(시범구매의 경우)

- 적정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 결정

협약체결
(6월~7월)

주관기업(공급기업·수요처)
→ TP

- 공급기업-수요기업과 컨소시엄 형성 후 주관기업(공급기업)과 전북TP 협약 체결

현장점검

TP

- (필요시) 기업별 사업 중간점검

최종점검
(10~11월)

주관기업(공급기업·수요처)
→ TP

- 탄소제품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수요기업의 설치완료 확인서로 설치 확인 및 최종점검

지원금 지급
(11~12월)

TP →
주관기업(공급기업·수요처)

-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 완료 필수
- 서류검토 완료 후 공급기업 계좌로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상시)

주관기업(공급기업·수요처)
→ TP

- 시제품 사용 후 관련 성능검진 데이터 확보 및 확인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및 주관(지원)기업(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가방식(선정 대면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대상 기업에 사전 공지 예정임

5

신청 · 접수

공고기간 : 2023년 5월 4일(목) ~ 6월 15일(목) 17:00까지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및 전북 R&D종합시스템(<http://rnd.jbtp.or.kr>) 공지사항 게재

접수기간 : 2023년 5월 29일(월) ~ 6월 15일(목) 17:00까지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신청방법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http://rndjbtp.or.kr)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를 폴더 안에 아래 서류번호순으로 나열하여, 폴더를 “*.zip”파일로 변환 후 “2023년 탄소옹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양식) 및 구비서류 1식 일체 “*.zip” 파일 제출
(사업신청서는 가능한 한글파일(직인필수)로 제출 요망)

① 탄소옹용제품 민간시설 보급

No	제출서류	비고
1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서식 제1호】	
2	○ 공급기업 및 수요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조업체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포함 제출)	
3	○ 2023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공급기업) * 공고일 이후	
4	○ 지원신청금액 산출 견적서(도면, 세부원가내역서 등)	
5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1년도, 2022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2022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2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가능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minwon.go.kr) 발급가능) 	
8	○ 민간보급 지원사업 설치 계약서【서식 제2호】	
9	○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서식 제3호】	
10	○ 참여확인서 및 청렴서약서【서식 제4호】	
11	○ 탄소지정기업 또는 우수탄소기업 지정서 (해당사)	
12	○ [설문지] 수요기술 조사서	선택

② 탄소응용제품 민간시설 시범보급

No	제출서류	비고
1	◦ 신청서 및 제안서【서식 제1호】	
2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3	◦ 공급기업 및 수요처 사업자등록증 각1부 (제조업체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포함 제출)	
4	◦ 2023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공급기업) *공고일 이후	
5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1년도, 2022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2022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2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가능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minwon.go.kr) 발급가능 	
8	◦ 제품규격서【서식 제2호】	
9	◦ 시제품 시범구매 계약서【서식 제3호】	
10	◦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및 신뢰 서약서【서식 제4호】	
11	◦ 참여확인서 및 정보공개동의서【서식 제5호】	
12	◦ 탄소지정기업 또는 우수탄소기업 지정서 (해당시)	
13	◦ [설문지] 수요기술 조사서	선택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특허
 -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 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출원 자료 제출
 - 제품 대상제품 지정 전까지 권리획득해야 함(미제출시 시제품 지정 심사에서 배제 됨)
- 제품규격서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 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규격서 작성 기준 참조)

○ 문 의 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김 훈 연구원 (Tel : 063-219-2397 / E-mail : hoon@bjtp.or.kr)

※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3)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4)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이 있을 수 있음

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서면평가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 신청자격 검토

□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 가지 표	세 부 내 용	
수행 목표 및 사업부합성 (30)	○ 수행 목표의 명확성(10)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사업부합성(20)	- 과제성과를 위한 목표의 적절성	
적정성 및 차별성 (40)	○ 지원 내용 및 합리성(30)	- 지원 내용 및 유형의 합리성	
	○ 차별성(10)	- 지원액 및 수요처 지원의 적정성	
사업성 (30)	○ 시장전망(10)	- 국내외 기준 기술대비 차별성	
	○ 지속성(10)	- 목표의 참신성 및 융합성	
	○ 가능성(10)	- 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가점 (10)	○ 복지시설 여부(5)	전체 수요처 중 복지시설 비율	가점
		20~39%	1점
		40~59%	2점
		60~79%	3점
		80~99%	4점
		100%	5점
	○ 탄소기업 지정여부(5)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확인	
		- 복지시설 비율은 신청 서류(사업계획서 등)로 판단하며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수요처 수 조정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 건 지원 제한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단순 R&D아이템, 유통, 퇴폐 등) 지원 제한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공급기업과 수요처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전북테크노파크는 민간보급 지원 보조금만 지원하며, 수요처와 공급 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자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변경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 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설치 전·후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 하는 성과조사에 응해야함.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재제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고객만족감사팀(063-219-2351)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